

부산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598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김남훈

피고, 피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박아현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9. 28.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1037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D과 피고 B 사이에 2018. 1.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8년 제168호의 공정증서에 기해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D과 피고 C 사이에 2018. 1.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8년 제189호의 공정증서에 기해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8,883,261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9,254,35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2,090,750원을 470,228,362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D이 2018. 1. 2. 피고 B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소멸되는 시효이익포기 의사표시와 D과 피고 B 사이에 2018. 1.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8년 제168호의 공정증서에 기해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각 취소하고, D과 피고 C 사이에 2018. 1.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8년 제189호의 공정증서에 기해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8. 1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8,883,261원을 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9,254,35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2,090,750원을 470,228,362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반복·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 1) 피고들이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주된 증거인 각 차용증(을 제3호증)에는 채권자들의 서명날인이 없고 연대보증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도 일부 있어서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상사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약속하는 것은 시효이익포기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차용증의 진정성립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들의 서명날인이 없더라도 차용증이 진정하게 성립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각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 문구만 있고 연대보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이 역시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방해할 수는 없다. 제1심에서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D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고, 통장 사본에 차용 취지의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각 차용증이 실제로 부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효이익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비록 D이 자신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나 I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B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

별지 목록 기재 D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순번 3, 5, 6 기재 각 채무에 관하여는, 당초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 시점인 2018. 1. 2.에, 즉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약속하더라도 시효이익포기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없다.

별지 목록 기재 D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 중 순번 1, 2, 4 기재 각 채무에 관하여는, 비록 당초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 1. 2.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제1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수차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보이고, 유예된 변제기를 기준으로 하면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변제를 약속하더라도 시효이익포기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없다. 설령 시효완성 후 변제의사표시를 보이는 등으로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채무를 승인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당초 변제기를 기준으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경과한 것과 경과하지 아니한 것 모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이자의 60%를 면제받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개별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인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B이 소멸시효 완성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민기, 판사 임상민, 판사 김영환

별지

목록

순번	차용일시	차용금액(원)	당초 변제기
1	2004. 5. 3.	12,800,000	2006. 5. 3.
2	2004. 10. 5.	50,000,000	2006. 10. 5.
3	2005. 1. 12.	259,200,000	2008. 1. 12.
4	2005. 2. 23.	39,000,000	2007. 2. 23.
5	2005. 3. 14.	23,000,000	2008. 3. 14.
6	2005. 8. 12.	20,000,000	2008. 8. 12.

끝.

